

# 더샵 분당티에르원

##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

### 1. 공급대상

- 단 지 명 : 더샵 분당티에르원
- 공급위치 : 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번지 일원
- 공급규모 : 지하 3층, 지상 11~28층 12개동, 총 873세대 [조합 770세대, 보류지 1세대 포함] 중 일반공급 102세대  
(특별공급 55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10세대)
- 입주시기 :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
- 공급대상 (단위:㎡, 세대)

주택형 (전용면적)	약식 표기	주택공급면적			기타 공용면적 (지하주차장 등)	계약면적	총 세대수	기관추천 배정세대
	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			
066.0000	66A1	66.9100	26.0604	92.9704	65.8485	158.8189	32	5
	66A1-1	66.9100	26.0604	92.9704	65.8485	158.8189	11	
074.0000	74A1	74.2500	28.9192	103.1692	73.0720	176.2412	1	-
	74A2	74.7300	29.1062	103.8362	73.5445	177.3806	3	
	74A2-1	74.6900	29.0906	103.7806	73.5050	177.2856	1	
084.9500	84A6	84.9500	33.0867	118.0367	83.6023	201.6390	14	2
084.7000	84A4-2	84.7000	32.9893	117.6893	83.3563	201.0456	5	-
084.6900	84A4-1	84.6900	32.9854	117.6754	83.3464	201.0218	1	-
084.6200	84A1-1	84.6200	32.9582	117.5782	83.2775	200.8557	4	-
084.3200	84A1-5	84.3200	32.8413	117.1613	82.9823	200.1436	1	-
084.0000	84A1	84.9000	33.0672	117.9672	83.5531	201.5203	6	3
	84A1-7	84.9000	33.0672	117.9672	83.5531	201.5203	7	
	84A2	84.8200	33.0361	117.8561	83.4743	201.3304	15	

※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66A1, 66A1-1타입은 066.0000, 84A1, 84A1-7, 84A2타입은 084.0000 주택형 기준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타입별 청약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기관별 배정 세대수 (※ 괄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)

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전용 85㎡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 내 공급)

구분	066.0000 (66A1, 66A1-1)	084.9500 (84A6)	084.0000 (84A1, 84A1-7, 84A2)	합계
국가 유공자 등	1(5)	-	1(5)	2(10)
장기복무 제대군인	1(5)	-	-	1(5)
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1(5)	1(5)	-	2(10)
장애인 (경기도)	1(5)	-	1(5)	2(10)
중소기업 근로자	1(5)	1(5)	1(5)	3(15)

※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(예비대상자 포함)까지 가능하며,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※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,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### 2. 분양가 및 분양조건

-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3. 분양 일정(예정)

※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정	비고
입주자모집공고	2025.10.24.(금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더샵 분당티에르원 홈페이지 (<a href="https://더샵분당티에르원.kr">https://더샵분당티에르원.kr</a>)</li> <li>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(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)</li> </ul>
건본주택 OPEN	추후 안내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0, 더샵갤러리 2층, ☎ 1800-6552</li> </ul>
특별공급 청약 접수	2025.11.03.(월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/ 09:00~17:30)</li> <li>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(10:00~14:00) 인터넷 청약계층에 한함</li> </ul>
당첨자 발표	2025.11.11.(화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)</li> </ul>

※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,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계층(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)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(자격확인 서류) 또는 청약자 본인 공동인증서 지참 시 건본주택 방문접수(10:00~14:00)가 허용됩니다. (은행창구 접수 불가)

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]

#### 4.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

구분	내용												
공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자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<b>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</b></li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</li> <li>※ 다만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,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0 472 1461 660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</th> <th>처리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</td> <td>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<b>유효</b>하며,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</td> <td>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</td> <td rowspan="2">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<b>유효</b>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</td> </tr> <tr> <td>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</td> <td><b>모두 부적격</b> 처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</li> <li>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 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구분		처리방법	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		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<b>유효</b> 하며,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	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	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	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<b>유효</b> 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	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	<b>모두 부적격</b> 처리	
구분		처리방법											
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		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<b>유효</b> 하며,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											
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	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	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<b>유효</b> 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											
	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		<b>모두 부적격</b> 처리										
무주택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</li> <li>※ <b>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</b> 다음 각 목의 사람(세대원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주택공급신청자</li> <li>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</li> <li>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(예 : 부·모, 장인·장모, 사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)</li> <li>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(예 :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)</li> <li>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(예) 전혼자녀 등 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
청약자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(<b>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</b>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</li> <li>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</li> <li>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</li> </o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0 1332 1461 1462"> <thead> <tr> <th colspan="4">[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]</th> </tr> <tr> <th>구분</th> <th>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</th> <th>그 밖의 광역시</th> <th>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(성남시 및 경기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용면적 85㎡ 이하</td> <td>300만원 이상</td> <td>250만원 이상</td> <td>200만원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</li> <li>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</li> </ul>	[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]				구분	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(성남시 및 경기도)	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 이상	250만원 이상	200만원 이상
[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]													
구분	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(성남시 및 경기도)										
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 이상	250만원 이상	200만원 이상							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</li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 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/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, 동·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·호수를 결정합니다.</li> <li>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</li> <li>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%까지 추첨으로 선정하며,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.</li> <li>특별공급 잔여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, 일반공급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,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</li> <li>기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릅니다.</li> </ul>												